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8
----------	-----

2018. 6. 27.(수)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6월 7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6월 22일

-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두표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 1. 6.)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16.9.22.)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  
(상시출장을 요하는 → 상시출장이 필요한,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일괄 → 한꺼번에, 통산 → 합산, 의하여 → 따라, 기타 띄어쓰기 정비 등)

## 나. 주요내용

### ○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안 별표)

구 분	현행	개정
제1호	46천원(도지사는 실비)	실비
제2호	40천원	실비 (상한액 : 서울 70천원/ 광역시60천원/ 그 외 50천원)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5조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등)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8호
의결 연월일	2018년 월 일 (제364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년 6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8
----------	-----

제출연월일 : 2018년 6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16.9.22.)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 2.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안 별표)
  - [현행] 제1호 46천원(도지사는 실비), 제2호 40천원
  -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제2호 상한액 : 서울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외 50천원)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5조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등)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상시출장공무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한다)에 대하여는”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구역외”를 “구역 외”로, “업무외”를 “업무 외”로,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이외의”를 “제1항 이외의”로, “계급별로”를 “직급에 따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을 “영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로,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행전안전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조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의 규정은”을 “영 제27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표와 같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숙박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경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식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 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현행	개정안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이외의 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u>별표 1</u>의 기준에 <u>의하여</u> 지급한다.</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u>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 -----.</p> <p>② <u>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게</u>는 ----- “영” --- 별표 1의 각 호를 ----- -.</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 <u>별표의</u> 기준에 <u>따라</u> 지급한다.</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영을</u> 준용하되, <u>영을</u>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1.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p> <p>&lt;신설&gt;</p> <p>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p>	<p>1. 영 제8조의2제5항은 ----- ----- -----.</p> <p>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중 "소속 장관" ----- -----.</p> <p>3. 영 제17조제1항 ----- "인사혁신처장과----- -----.</p> <p>4. 영 제18조제1항 ----- "「공용차량 관리 규정」 ----- ----- ----- -----.</p> <p>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p> <p>5. 영 제24조제5항 ----- ----- -----</p>

현행	개정안
<p>항"으로 본다.</p> <p>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p>	<p>-----.</p> <p>6. 영 제27조는 ----- -----.</p> <p>7. 영 제29조제1항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 "인사혁신처장----- ----- ----- -.</p> <p>8. 영 별표 1----- ----- ----- ----- ----- ----- -----,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p>

현행	개정안																																				
<p>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p>	<p>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p>																																				
<p><b>【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b></p>	<p><b>【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버스)운임</th> <th>숙박비 (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1등급</td> <td>1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td> </tr> <tr> <td>제2호</td> <td>2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4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버스)운임</th> <th>숙박비 (1박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1등급</td> <td>1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실비</td> </tr> <tr> <td>제2호</td> <td>2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p>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lt;신 설&gt;</p>	<p>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2. 자동차(버스)운임은 <u>국토해양부장관</u>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u>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u>국토해양부장관</u>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2. 자동차(버스)운임은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u>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u>해양수산부장관</u>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 4. (생략)</p>	<p>3. ~ 4.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 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 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 인사혁신처 예규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15.1.6.)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 16.9.22.)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안 별표)
- [현행] 제1호 46천원(도지사는 실비), 제2호 40천원  
[개정]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제2호 상한액 : 서울 70천원/광역시 60천원/그 외 50천원)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5조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2조 등)

## 2. 비용 발생 요인

### ○ 숙박비 지급 금액 현실화에 따라 여비 지급 비용 증가

※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예산수반 사항 없음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 [별표]

#### 운임·숙박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숙박비 지급일 2,400박 / 지역구분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129,200천원 세출 추계

- 서 울 : 130박 × 30천원 = 3,900천원

- 광 역 시 : 380박 × 20천원 = 7,600천원

- 기 타 : 1,890박 × 10천원 = 18,900천원

※ 2호 기준으로 숙박수 × [변경된 숙박비 - 4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숙박비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로 충당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이상은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 입						
국 비 도 비 기타 (사업수입)						
세 출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국내여비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재원 조달	7,600	30,400	30,400	30,400	30,400	129,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도 비					
자체 수입	소 계	7,600	30,400	30,400	30,400	129,200
	지방세	7,600	30,400	30,400	30,400	129,200
	세외수입					